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1. 13	3. / (총 18	3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 성 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철 은 효 유		02-2113-7660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 덕 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최 문 갑		031-8008-5422
강원도	과 장	김 만 호		033-249-3830
안전총괄과	담 당 자	박 기 철		033-249-38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헌 준 정 윤		044-202-1750 044-202-1755
환경부	과 장	강 성 구		044-201-7316
자연공원과	담 당 자	권 영 미		044-201-731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결과,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항만에서의 늘어난 방역 업무로 현장에서 검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피로도 누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일부 외국인 선원은 야간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항만 내 무단상륙을 하는 등 방역관리에도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수부**에게 **항만 방역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한-중 기업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시행중인 한-중 신속통로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외교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에게 상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 일일 확진자 발생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방역의 경계심도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방역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부터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도 **현장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경기, 강원)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하향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되었으나 수도권 확진자가 줄지 않는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보육교직원과 24개월 이상의 아동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특별활동은 부모 동의 등 사전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소모임 자제 등을 권고한다.
    - 향후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는 경우에는 집단감염 상황, 지역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휴원 검토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긴급보육은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 오늘(11.13.)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11월 13일(금)부터 11월 27일(금)까지 2주간 자치구별로 24시간 민원 처리 긴급 대응팀을 운영한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3건의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한다.
    - 지난 7월 7일 내렸던 집합제한 명령\*과 지난 8월 31일 방문판 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 및 변경하여, 어제 (11.12.)부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 \* 대상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물류시설, 콜센터











- 한편, 주말을 맞아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 집중 **점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를 자제하도록 지도 하고, 민간실내체육시설과 골프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최근 1주일(11.7.~11.13.)동안 64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였다.
  - 한편, 현재 거리 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원주시의 경우에는  $50m^2 \sim 150m^2$  미만의 식당과 카페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도록 추가 조치하였다.
  - 또한, 11월 11일(수)부터 11월 30일(월)까지 중점관리시설 7종\*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종교시설, 골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 유흥주점 3종(도내 감성주점, 헌팅포자 無),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방문·직접판매











##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 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b>다른</b>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사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1** 지난 **주말**(11월 7일~11월 8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6,301천** 건, 전국은 **74,903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798천 건), 전국은 3.2%(2,321천 건) 증가하였다.
  - \* 수도권 : (10.31.~11.1.) 35,503천 건 → (11.7.~11.8.) 36,301천 건 전 국 : (10.31.~11.1.) 72,582천 건 → (11.7.~11.8.) 74,903천 건

###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②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31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3.9%(875천 건) 증가하였다.
  - \* 합산 이용량 : (10.31.~11.1.) 22,605천 건 → (11.7.~11.8.) 23,480천 건

###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❸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131억 원, 전국은 2조1948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30일~11월 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2**%(572억 원) 감소하였고, 전국은 **5.2**%(1196억 원) 감소하였다.
  - \* 수도권: (10.31.~11.1.) 1조3703억 원 → (11.7.~11.8.) 1조3131억 원 전 국: (10.31.~11.1.) 2조3144억 원 → (11.7.~11.8.) 2조1948억 원

###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3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목표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일일 확진자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방역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하고 있다.
    -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10.19.~11.6.)한 요양병원 등의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여,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회/일 증상 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 시 검사, 종사자는 업무 배제,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 □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 방역지원지역은 최근의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할 계획이다.
  - 방역지원지역 선정 후에는 방역지원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하여 2주간 집중적으로 교육, 검사, 점검 등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인력 등 지원한다.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받도록 독려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시·군·구 단위로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운영 단축·중단 등 거리 두기를 탄력적으로 강화한다.
- □ 수능·연말연시 등 특별히 위험도가 증가하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한다.
  -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사전에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집합 제한, 집합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한다.
- □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를 확대한다.
  -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응급 PCR 검사를 사용할 수 없거나 도서·산간 지역 등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검사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기시간 및 행정절 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전산화 등 추진)
- □ 권역별, 시·도별로 단계 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 대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 거리 두기 단계 전환기준 변경에 따라 권역별, 시·도별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 주요 지표를 산출·공표하고, 단계 기준 지표의 80% 수준에 이르는 경우는 예비경보를 실시한다.











## 4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건강 보험공단은 **10월 22일부터 2주간 방역실태를 종합 점검**하였다.
    -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하였다.
  - □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미흡한 사항도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발열 등 의심 종사자 업무배제,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등은 잘 준수하고 있었으나,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하거나,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되었다.
  - 요양시설의 경우, 예방수칙 교육 실시, 손씻기 안내문 부착, 감염 관리책임자 지정 항목은 준수율이 높았으나, 종사자 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42.2%), 공간 협소, 여유침실 부족으로 의심환자 격리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시설(16.2%)이 있었다.
  -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발열체크 등 의심증상 확인, 의심환자 발생 대비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 (각각 56%, 63%)이 많았다.











- □ 후속 조치로,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미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한 안내와 방역수칙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감염 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한다.
- 정신병원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환경 실태에 대한 전수 현장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폐쇄 병동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입원실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 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 □ 아울러, 면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요양병원은 안심면회실 개선을 추진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공간을 포함한 면회실 설치 비용 지워을 검토한다.
- □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하여 **항정신병제 처방량이** 7.5%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한다.
  - 또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 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는 **항정신병제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 5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로부터 '단풍철 국립공원 코로나 19 방역대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단풍철을 맞아 산행객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국립공원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하였다.
  - 단체 탐방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공단 직영 주차장(21곳)의 **대형** 버스 이용을 제한\*하고, 공원 및 주차장 입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진입 금지, 회차 등을 유도하였다.
    - \* 10.17.(토)~11.15.(일) 기간 동안 공원별로 단풍 절정기에 16일간 실시
  - 또한, 21개 공원 정상부, 전망대, 쉼터 등 주요 탐방지점 58곳에 **출입 금지선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밀집을 방지**하였으며, 설악산과 내장산은 케이블카 탑승 인원을 50%로 제한하였다.
  - 유튜브 채널('국립공원TV')을 통해 설악산, 지리산, 내장산 등 **17개** 국립공원의 가을 및 단풍 절정기 영상을 제공하는 등 국립공원을 찾지 않고도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 11.9. 기준 조회수 37,713회
  - 한편 '20년 10월의 국립공원 탐방객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11%(616,287명) 감소**하였다.
    - \* 국립공원 탐방객 수 : '19.10월 5,598,142명  $\rightarrow$  '20.10월 4,981,855명
    - 대형차량 이용률이 높았던 국립공원(내장산, 오대산, 주왕산 등)은 탐방객이 최대 53%까지 감소하였으나,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쉬운 국립공원(북한산, 계룡산 등)의 탐방객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307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03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만 103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28명이 증가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8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한편, 11월 1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464개소, ▲실내 체육시설 1,339개소 등 24개 분야 총 1만590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 수칙 미준수 39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 붙임 >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 2.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 □ 다중이용시설

구분		1단계	1.5단계	
	<b>중점관리시설</b>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등		병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등)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u>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u> <u>추가</u>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 <u>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u> 제한 추가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 150m²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u>수칙은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u>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m <sup>*</sup> 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u>시설 면적 4m<sup>2</sup>당 1명 인원 제한 추가</u>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m³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방		▲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m <sup>2</sup> 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 시설 면적 4m'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직업훈련기관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스터디카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 <u>니는 일당 단 기계 다기 구기</u>
	놀이공원·	관리, 환기·소독	▲ <del>수용인원</del> 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워터파크		-
	이·미용업		▲ <u>시설 면적 4m<sup>2</sup>당 1명 인원 제한 또는</u>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 마스크 착용, <mark>환기·소독</mark>	▲ 추가 수칙 없음
	백화점	1— 10, 2 1 4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 <u>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u>
	70848	- SE S-1 S 30% EE ME	▲ <u>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u>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사설, 대중교통, 의료 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 <u>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u>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 50% 이내로 관중 입장	▲ <u>30% 이내로 관중 입장</u>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 좌석 한 칸 띄우기 ▲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 <u>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u> <u>이내로 제한</u> ▲ <u>모임·식사 금지</u>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 근무 실시 권고(예: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붙임2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워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